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5. 6. 15(월) 평창군수(재무과)

나. 회부일자 : 2015. 6. 17(수)

다. 상정일자 : 2015. 6. 22(월) 제21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재무과장 장동기)

- '99년 5천원으로 인상되어 운영 중인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보통교부세 산정시 자체노력 반영제도 관련, 패널티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건전 재정 운영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어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인 1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함.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보통교부세 산정시 자체노력 반영제도에 반영됨에 따라, 패널티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건전 재정 운영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균등분 주민세 5,000원을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인 1만원으로 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세법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평창군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5,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법령에 의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초과하거나 위법한 사항은 없다 하겠음.
- 다만,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이 2015년 1월 1일 개정되어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기준 중 “탄력세율 적용 패널티 반영률”이 150%에서 200%로 상승함에 따라 패널티 금액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로인한 교부세 지원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에 대하여는 타 시군의 사례(첨부),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5천원”을 “1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